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21-001	게재일	2019.02.012 08:25
제 목	김우림 돋보이는 싱그러운 미소,,,배우 정겨운이혼 이혼 아침부터 뜨거운감자		
U R L	http://www.marketnews.co.kr/view.php?ud=201902120823426546a28b45db0_24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마켓뉴스의 해당 기사는 배우 정겨운과 그의 아내 김우림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화제가 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날짜 표시도 없고, 어디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동상이몽' 방송을 보지 않은 독자들은 이 기사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기사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기사 제목에는 본문과 아무 관련이 없는 표현을 넣었다.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도 기사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p> <p>2.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보도의 완전성)과 제6조 제1항(제목의 원칙)을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 (보도의 완전성)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6조 제1항 (제목의 원칙)		

2019년 2월 21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석기, 김용, 남영진, 이강혁, 이성규, 황용석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21-003	게재일	2019.01.30 10:16
제 목	한국인 밥상 GMO 늘어난다...위험과 대응책		
U R L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13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권고'로 결정한다.		
이 유	<p>1. 컨슈머치의 해당 기사는 콩, 옥수수에 이어 감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식품)를 승인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인 밥상에서 늘어나고 있는 GMO가 과연 안전한 식품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며, 안전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GMO 표시 개정 청원을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월 30일 전송된 위 기사에 “올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약 21만 명의 소비자들이 GMO 표시 개정 청원에 동참했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정부가 내년부터 GMO감자를 추가로 승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완전표시제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란 부분까지 독자가 시점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p> <p>2. 위 기사는 지난해 4월을 올해 4월로 잘못 표기하는 등 기사 전송 시점과 맞지 않는 시제를 사용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보도의 완전성)을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 (보도의 완전성)		
<p>2019년 2월 21일</p> <p>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p> <p>위원장 이민규</p> <p>위 원 김석기, 김용, 남영진, 이강혁, 이성규, 황용석</p>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21-005	게재일	2019.02.01 16:02
제 목	공현주, 주차장에서 포착된 사진 보니? '억대 스포츠카 앞에서'		
U R L	http://daily.hankooki.com/lpage/entv/201902/dh20190201160201139020.htm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데일리한국의 해당 기사는 배우 공현주가 억대 스포츠카 앞에서 포착됐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위 기사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공현주, 억대 스포츠카 사이에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면서 시점을 과거로만 밝혔다. 그러나 이 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실검에 오를 때마다 실렸던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과거'라고만 표시해 시점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이 최근의 일처럼 오해할 수 있다.</p> <p>2. 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보도의 완전성)을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 (보도의 완전성)		
<p>2019년 2월 21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석기, 김용, 남영진, 이강혁, 이성규, 황용석</p>			